제3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2025. 10. 29.(수)

행정복지위원회

- 목 차 -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실상의 도로 지정에 관한 조례안 ····· 4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 6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독도 바로알기 지원 조례안 ····· 8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 13

7.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15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 20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22

11. 달성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24

12. 달성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13호

○ 제 출 일: 2025년 10월 10일

○ 제 출 자: 김보경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10월 16일

○ 상정 및 의결: 제3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0. 23.)

2. 제안사유

○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특성 및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행정지원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4. 관계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자치경찰제는 2021년 7월 전면 시행된 이후,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자리 잡았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춘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 대구광역시 내에서는 중구, 서구, 수성구, 북구, 동구 등이 이미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내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보호 등 분야별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조례 대부분 구·군이 경찰서와 교육청·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회 구성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 또한 달성군의 지역적 특성과 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5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실무협의회 구성(안 제8조) 등을 규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행정지원 및 예산 지원(안 제9조), 수당 지급 근거(안 제10조) 등을 통해 향후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타당하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의 체계적 정합성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상정안에 대해 총무과에서는 자치경찰의 업무가 여러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실질적 추진체계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부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본 조례안의 자치경찰의 사무의 범위는 상위법령상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내로 판단되며 이는 상위법령과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문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관련 업무를 추진 시 상위법령 및 본 조례를 근거하여 협업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군민의 생활안전 및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실상의 도로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29호

○ 제 출 일: 2025년 10월 14일

○ 제 출 자: 신동윤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10월 16일

○ 상정 및 의결: 제3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0. 23.)

2. 제안사유

○ 「건축법」 제45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관계법령

○ 「건축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허가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주민의 통행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 제3조에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군수가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도로관리대장 작성 의무를,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하여 행정절차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건축법」 위임사항에 근거하여 사실상의 도로 지정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14호

○ 제 출 일: 2025년 10월 10일

○ 제 출 자: 서도원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10월 16일

○ 상정 및 의결: 제3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0. 23.)

2. 제안사유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거주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관계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주택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합니다.

○ 현재 달성군 관내에 “영구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곳은 1,400여 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대구옥포 천년나무2단지 내 영구임대아파트 180세대입니다.

○ 관내 대구광역시 북구, 동구, 달서구, 수성구 등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하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 거주자의 관리비 부담완화 및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은 공동전기요금 중 지원할 항목을 명시하고 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행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무분별한 지급 및 예산 증액을 방지하였습니다.

○ 따라서, 주거취약계층의 관리비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독도 바로알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15호

○ 제 출 일: 2025년 10월 10일

○ 제 출 자: 박주용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10월 16일

○ 상정 및 의결: 제3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0. 23.)

2.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과 주권 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독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독도교육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예산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달성군민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과 주권 의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 독도와 관련하여서는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2005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되어 해당 법령에 따라 독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 2021년 ‘제4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2025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① 독도의 과학적 조사 및 활용 확대, ②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안전 및 관리 강화, ③ 깨끗한 환경 조성 및 생태계관리 강화, ④ 독도 교육의 다변화 및 체계적인 홍보, 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역량 강화 등 5대 추진전략, 총 7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본 제정조례안의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교육부는 독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독도교육 활성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내 대구의 경우에도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를 2020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 다만, 교육청의 조례의 대상은 초중등 교육기관에 한정되어 있는점을 들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 2025년 10월 기준 독도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는 전국 20개 정도이며, 제정한 조례의 목적은 주로 ① 교육, ② 독도거주 민간인, ③ 기타(독도의 날, 시설, 출향해녀 예우 등)로 나타납니다.

○ 이에, 타 지자체 조례와 달리 본 조례안은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홍보사업까지 포괄함으로써 독도 가치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점, 독도의 날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교육 및 홍보 기획을 통해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본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16호

○ 제 출 일: 2025년 10월 10일

○ 제 출 자: 양은숙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10월 16일

○ 상정 및 의결: 제3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0. 23.)

2. 제안사유

○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립작은도서관의 대출 권수·회원제 등 운영기준을 달성군립도서관 운영기준과 통일함으로써 달성군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일관된 도서관 정책과 운영체계를 마련해 달성군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용어 현행화

○ 공립작은도서관 운영기준을 달성군립도서관 운영기준과 정합화 (안 제6조·제19조·제22조)

○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자율성 명확화(안 제22조)

4. 관계법령

○ 「도서관법」, 같은법 시행령,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용어 정비와 등록·지원 절차의 구체화를 통해 작은도서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 제10조, 제12조, 제19조에서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작은도서관이 보다 안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 및 운영을 하게 변경하였으며, 준용 조항 등을 신설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사립도서관 등록 의무 강화, 지원기준, 운영인력, 회원제 규정 등의 완화를 통해 주민 중심의 이용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17호

○ 제 출 일: 2025년 10월 10일

○ 제 출 자: 양은숙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10월 16일

○ 상정 및 의결: 제3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0. 23.)

2. 제안사유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시행계획 및 기반조성, 지원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4. 관계법령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정책은 2023년 10월 제정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광역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특히 대구광역시는 상위법령이 제정되기 이전인 2009년부터 「대구광역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및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① 공익활동형, ② 사회서비스형, ③ 민간형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현재 대구 관내 자치구에서는 남구, 북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 향후 관련 시행계획을 수립 시, 중앙의 기본계획 및 광역의 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상위법령의 정합성 확보 및 달성군의 특성에 맞게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점에서 본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22호

○ 제 출 일: 2025년 10월 2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0월 16일

○ 상정 및 의결: 제3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2025. 10. 24.)

2. 제안사유

○ 군민의 영어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달성군 원어민영어교실” 위탁기간이 (2024. 1. 1. ~ 2025. 12 .31.)이 만료될 예정임

○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현행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26년부터 2년간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6. 1. 1. ~ 2027. 12. 31.(2년)

나. 사업대상 : 7세 이상 아동, 초등학생, 장애인

다. 강의장소 : 3개 권역 4개소(화원비전센터, 논공읍 장애인복지관, 다사문화센터, 현풍교육문화복지센터)

라. 운영규모 : 15교실, 총 85class, 월시수 848시간

마. 소요예산 : 882백만 원(군비 100%)

바. 위탁사무

1) 권역별 실용영어 강좌 개설 및 운영

2) 원어민 회화 중심 수업, 교재개발 및 수준별 학습

3) 강사 및 수강생 관리 등 운영 전반

4.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사무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 본 사업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현 수탁기관인 ㈜헤럴드대구본부와는 2024년 1월 재계약하여 2025년 12월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사무는 2023년부터 꾸준히 확대되어 △영어교실 추가 개소운영, △연중시행, △최저인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2023년 대비 약 2.5배의 예산이 확대(882,000천원)되었습니다.

○ 현 수탁기간의 경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결과 사업성과가 탁월(평균 92점)로 평가되었으며, 적법한 원어민 강사 채용을 위한 사전절차 및 강사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전문 커리큘럼 운영 등, 영어

전문교육기관의 지속적 참여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점에서 민간위탁 재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또한 달성군 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의 영어 접근성 확대, 글로벌 인재양성 기반 조성 등 정책적 효과가 예상되므로, 행정 효율성과 주민편익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부합하며, 위탁의 연속성과 사업성과 측면에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23호

○ 제 출 일: 2025년 10월 2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0월 16일

○ 상정 및 의결: 제3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2025. 10. 24.)

2. 제안사유

○ 청년들의 능력개발, 고용촉진, 문화예술 활동 등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청년 역량강화와 지역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년의 능력 개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 청년 고용촉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의 3)

○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의4)

4.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청년정책 추진 근거를 구체화하고, 청년들의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기존 조례가 포괄적 선언에 그쳤던 '청년 지원사업'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능력개발·고용촉진·문화예술 활동을 명시한 점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 「청년기본법」 제2조제2항에서는 청년의 행복한 삶의 권리를 보장받기위한 기본이념을 각 호의 사항들로 안내하고 있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신설조문들의 해당 조문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다만, 새로 신설되는 조문이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세부사업과 예산 연계가 필요하며 추후 청년혁신위원회, 민간전문가, 청년센터, 그 밖의 기관 및 단체들과 긴밀한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24호

○ 제 출 일: 2025년 10월 2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0월 16일

○ 상정 및 의결: 제3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2025. 10. 24.)

2. 제안사유

○ 현행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읍면개발자문위원회가 없으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읍면개발자문위원회가 없으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실효성이 없어 「달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 본 조례는 1964년 제정 되어 과거 지역개발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자문받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 현재 읍·면 단위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협의회, 이장협의회 등이 사실상 지역 개발 및 행정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기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낮습니다.

○ 이에 본 폐지조례안은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단순화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로 판단되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25호

○ 제 출 일: 2025년 10월 2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0월 16일

○ 상정 및 의결: 제3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2025. 10. 24.)

2. 제안사유

○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달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11조)

4. 관계법령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달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 상위법령 돌봄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26. 3.)을 앞두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대한민국의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14% 이상)에 진입한지 7년만인 2024년에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달성군 또한 2022년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4년 기준 16.7%로 지속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동안 분절적으로 시행되었던 사회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다만, 지역계획 수립 시 여러 사회서비스들이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제공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관련 상위법령들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것입니다.

○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본 조례안은 돌봄정책의 효율성과 포괄성을 제고하고, 군민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달성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26호

○ 제 출 일: 2025년 10월 2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0월 16일

○ 상정 및 의결: 제3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2025. 10. 24.)

2. 제안사유

○ 달성군 가족센터 위탁기간 만료 도래 및 현 수탁기관의 재계약 의사 표시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었고 이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종사자수	비 고
달성군가족센터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231	1,013.57㎡ (교육문화복지센터 1층)	31명	-

나.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달성군가족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사업

·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사업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 지역특화사업

· 외부사업 및 공모사업

다. 조직 및 구성

구 분	계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대리	팀원	사무원	기간제
인 원	31명	1	1	2	3	22	1	1

라. 위탁기간: 5년(2026. 1. 1. ~ 2030. 12. 31.)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성과 평가 실시 후 70점 이상 시 재계약

바.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5. 9. : 운영평가 서류 접수

– 2025. 9.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별도 첨부

아. 성과평가 결과

– 평균 92점(적합)

자. 향후일정

– 2025. 10. : 군의회 동의

– 2025. 11. : 재계약 체결 및 공보 게재

4.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달성군 가족센터의 위탁기간(2023. 1. ~ 2025. 12.)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위탁운영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 달성군 가족센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①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②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③ 가정생활·가족문화 운동의 전개, ④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⑤ 가족지원서비스 욕구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기존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지난 위탁기간 동안 가족센터 운영을 통해 가족돌봄,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뿐만아니라 군비지원사업 및 외부사업 등을 유치하여 다양한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2025. 12.)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이 재계약 의사 표시를 해 옴에 따라,

○ 현 수탁기관을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92점(평균 70점 이상이면 재계약 가능)으로 적정으로

의결되었으며, 사업의 연속적인 측면이 효율적이므로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달성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27호
○ 제 출 일: 2025년 10월 2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0월 16일
○ 상정 및 의결: 제3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2025. 10. 24.)

2. 제안사유

○ 달성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지정기간 만료 도래 및 현 수탁기관의 재계약 의사표시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었고 이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달성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나.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아이돌보미 관리 : 아이돌보미 모집 및 교육, DB 관리, 아이돌보미 활동 지원 등
- 이용자 가정 관리 : 서비스 이용신청 접수, 가정방문 및 상담조사,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인접지역 이용가정의 긴급 사유 발생 시 연계, 안전사고 관리, 서비스 모니터링 등

- 사업운영 관리 :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실적 등 보고, 사업홍보, 민원관리 등

다. 조직 및 구성 : 아이돌봄 전담인력 5명(대리1, 팀원4)

라. 위탁기간: 5년(2026. 1. 1. ~ 2030. 12. 31.)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성과 평가 실시 후 70점 이상 시 재계약

바.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5. 9. : 운영평가 서류 접수

– 2025. 9.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별도 첨부

아. 성과평가 결과

– 평균 89점(적합)

자. 향후일정

– 2025. 10. : 군의회 동의

– 2025. 11. : 재계약 체결 및 공보 게재

4. 관계법령

○ 「아이돌봄지원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달성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의 위탁기간(2023. 1. ~ 2025. 12.)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달성군 가족센터 위탁운영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 달성군 아이돌봄지원사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에 따라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① 가족생활 사업 ② 지역공동체 사업, ③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④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⑤ 지역특화사업 및 외부 공모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존 수탁기관인 달성군 가족센터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2009년 개소하여 ① 가족교육·상담 사업팀 ② 가족문화·특성화 사업팀, ③ 아이돌봄·행정운영팀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2024년 가족상담 우수기관 선정 등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입니다.

○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2025. 12.)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달성군 가족센터 재계약 의사 표시를 해 옴에 따라,

○ 현 수탁기관을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89점(평균 70점 이상이면 재계약 가능)으로 적정으로 의결되었으며, 사업의 연속적인 측면이 효율적이므로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